

2023 학부모회 규정 주요 개정 내용

제7조(임원의 직무) - 추가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총회) - 추가

- ⑧ 회장은 제7항의 사유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 또는 직무대행에게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추가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추가

- ① 학부모회 총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
 4. 기타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